총복연-00257 호(2007. 8. 30)에 의거

2007. 10. 1 판매개시

무배당 하나즉시연금보험 약관

제 제 제 제 제 제 제	1 2 3 4 조 조 5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계약의 무효】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의 소멸】 【보험나이】
		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11 조 12 조 13 조 14 조 15 조 16 조 17 조	험금의 지급사유(회사의 주된 의무)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해약환급금】 【배당금의 지급】 【소멸시효】
제 제	19 조 20 조	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22 조 23 조 24 조 25 조 26 조 27 조 28 조 29 조	험금 지급 등의 절차 (주소변경 통지) 【 (주소변경 통지) 【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 대표자의 지정】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금 등의 지급】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내용의 교환】 【 보험계약대출】
제 제	31 조 32 조	쟁조정 등 【분쟁의 조정】 【관할법원】 【약관의 해석】

제 34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 35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 36 조 【준거법】 제 37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하나즉시연금보험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 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보장계약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 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 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 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 1. 보장계약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② 계약자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③ 제 1 항 제 2 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형태 및 연금지급주기를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금지급주기		
종신연금형 (연단위,		
사소여그형	종신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	정기상속연금형(10 년, 15 년, 20 년 지급)	월단위	

제 4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서 정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10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 2.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 ④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5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계약의 경우

제 6 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가입금액(상속연금형에 한함)
 - 2.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 3.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상속연금형의 경우 계약자가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 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6 조(해약환급 금) 제 1 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제 16 조(해약환급금)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합니다. 단, 제 5 조(계약의 무효) 제 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 1 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10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제 20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2. 제 19 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 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의 주된 의무)

제 1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생존연금 지급
- 2.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 3. 정기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 자)가 살아 있을 때 : 만기보험금

제 1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8 조(계약의 소멸), 제 1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

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 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 1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보증지급분을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 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일시금 신청당시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 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 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 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 1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 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 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 1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 1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회사 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 16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계약일로부터 10 년이내에는 연복리 2.5%, 10 년초과시에는 연복리 2.0% 최저보증합니다)은 제 15 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③ 상속연금형의 경우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 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17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8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19 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 19 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진단계약의 경 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 우
- ② 제 1 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 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 제 19 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1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 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2 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 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3 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 11 조(보험금의 종류 및지급사유) 제 1 호 및 제 3 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 2 호 의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24 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25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 1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26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27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 26 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생존연금 및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 1 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

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 20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1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 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 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1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 우에는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29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3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 30 조 【보험계약대출】

- ① 상속연금형(종신상속연금형, 정기상속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 1 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 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 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31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34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5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6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37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종신연금형

급여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생존연금 (약관 제 11 조 제 1 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 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 년 또는 20년 보증지급)
사망보험금 (약관 제 11 조 제 2 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 지급

■ 상속연금형

(1) 종신상속연금형

급여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생존연금 (약관 제 11 조 제 1 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 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사망보험금 (약관 제 11 조 제 2 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지급	

(2) 정기상속연금형

(2) 8/18-11-18			
급여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생존연금 (약관 제 11 조 제 1 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책임 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10 년, 15 년, 20 년)동안 지급	
사망보험금 (약관 제 11 조 제 2 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지급	
만기보험금 (약관 제 11 조 제 3 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책임준비금(일시납보험료 해당액) 지급	

(주) 1. 생존연금 지급 개시 및 지급주기

연금지급주기	연금지급개시		
연단위	보장개시일부터 만 1 년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매년지급		
월단위	보장개시일부터 만 1 개월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매월지급		

- 2.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 산됩니다.
- 3.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 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4.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 년, 20 년) 중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해당 연금액을 매월 또 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일시금 수령당시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 기간(10 년, 20 년)안의 생존연금은 일시금 수령당시의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수령할 수 있습니다.
- 6. 공시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일로부터 10 년 이내 연복리 2.5%, 10 년초과 연복리 2.0%를 최저로 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홉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홉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 4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02-1 호, 2003.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 5 차 개정 이후 위 1 및 2 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별 표 3) <u>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 28 조 제 2 항 관련)</u>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7 일이전에 지 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생존연금 (제 11 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7 일이전에 지 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 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제 1 호)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 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사망보험금 (제 11 조 제 2 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도래 7일이전 에 지급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청구일까 지의 기간	공시이율
만기보험금 (제 11 조 제 3 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도래 7일이전 에 지급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청구 일까지의 기간	1 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 율
해약환급금 (제 16 조 제 1 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 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해약환급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 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 18 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이자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